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6 단독 패션쇼 개최 지원(위드 컨셉코리아) ○ 사업목적 :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통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7. 4. 9.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해외 패션위크 기간 브랜드 단독 패션쇼 개최 지원(27S/S, 27F/W 시즌 당 1회, 총 2회) ○ 지원규모 : 2개 내외 브랜드 (국고지원금 총 750,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패션위크) 브랜드 당 국고지원금 최대 4억원 / (이외 패션위크) 브랜드 당 국고지원금 최대 3억원 * 뉴욕, 런던, 밀라노, 상해 패션위크 등 브랜드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패션위크를 사업계획서에 명시 *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국내 디자이너패션 브랜드(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 디자이너패션 의류 브랜드(남성, 여성, 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한국 국적)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아동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잡화, 소재 관련 기업 제외 ② 4시즌 이상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경험이 있는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룩북, 라인 시트,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③ 1회 이상 패션쇼 개최 경험이 있는 브랜드(사업자) ④ 2025년 매출 10억 원 이상인 브랜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매출/수출실적 확인 가능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 함 - 수출 실적 필수 포함 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 '지원요건' 참조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 S/S 시즌, 2027 F/W 시즌 해외 패션위크 기간에 각 1회씩 브랜드 단독 패션쇼를 개최하고 해외 세일즈를 진행하여야 함(협약기간 내 총 2회 개최)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금을 편성하여야 함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부담금)
신청서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기간 : 2026. 3. 12.(목) ~ 4. 9.(목) 오전 11:00 까지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4. 9.(목) 오전 11:00 까지 -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제출서류 확인, 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서류 목록 일체 확인 후 작성서류 포함 전체 자료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IP 외 다른 확장자 압축파일은 확인 불가하며,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스템 업로드 용량(50MB)에 제한이 있으므로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파일 압축 시, MAC에서 압축한 파일은 파일 깨짐 또는 다운로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WINDOWS 에서 압축하시거나 개별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개별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 주의)

○ 제출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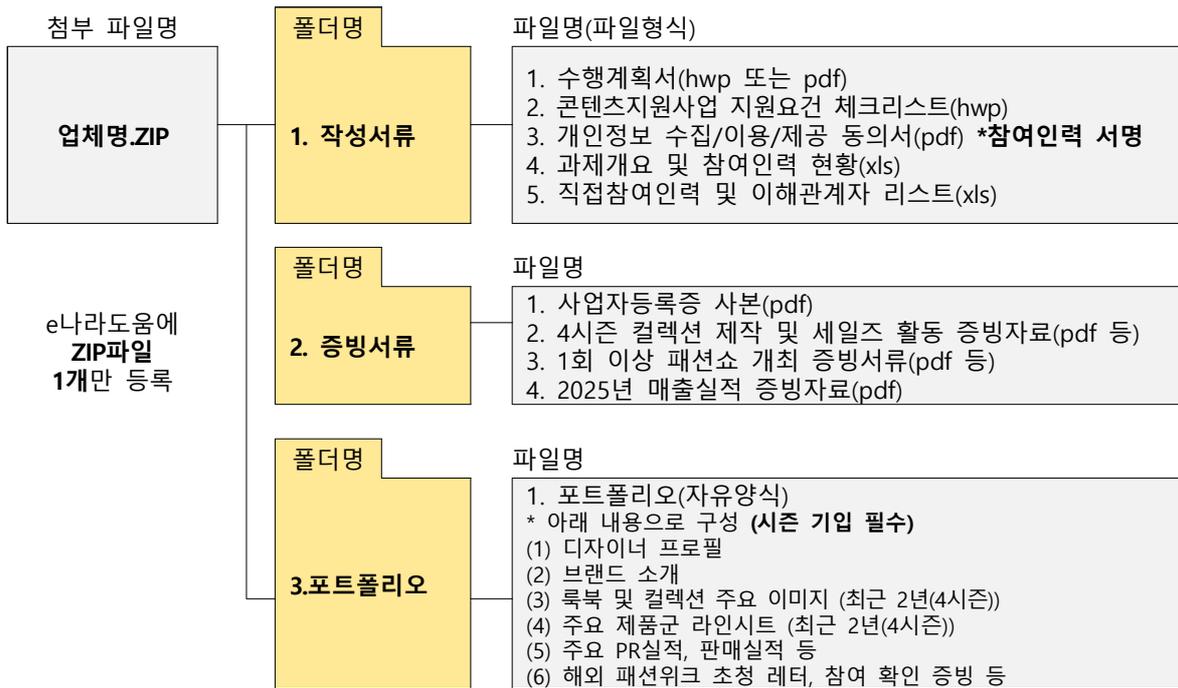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작성서류 (필수제출/ 지정양식)	① 수행계획서	한글파일 제출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한글파일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서명 후 PDF 파일 제출
	④ 과제개요 및 참여인력현황	엑셀파일 제출 ※ 파일형식 변환 금지
	⑤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증빙서류(외부 발급 등) (필수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② 4시즌 컬렉션 제작 및 국내외 세일즈 활동 증빙자료 ※ (예시) 시즌별 쇼룸 계약서, 트레이드쇼 참가 결과, 판매 실적보 고서, 계약서, 록북 등	
	③ 패션쇼 개최 증빙(런웨이 영상 url, 보도자료, 사진 등)	
	④ 2025년 매출실적 증빙자료(총 10억 이상) ※ (예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출실적명세서, 소득 금액 증명 중 선택하여 제출 ※ 수출실적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기타서류 (선택제출 /자유양식)	① 포트폴리오(하단 순서 참조하여 작성)	- 브랜드 경쟁력 판단을 위해 가급적 필히 제출 요망 - 용량 내 동영상 제출 가능 - 시즌 기입 필수 - 용량 최소화하여 업로드 (이메일 등 별도 제출 불가)
	1) 디자이너 프로필	
	2) 브랜드 소개	
	3) 록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 (최근 2년(4시즌))	
	4)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 (최근 2년(4시즌))	
	5) 주요 PR실적, 판매실적 등	
	6) 해외 패션위크 초청레터, 참여 확인 증빙 등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작성서류' 중 미제출 혹은 불성실 제출 건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폴더 트리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종합심사(사업비 조정)을 통해 최종 선정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발표·질의응답 평가	<3단계>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등 제출서류 평가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과제의 4배수 통과 (통과기준) 7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서면 통과 과제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디자이너 필수 참석 (통과기준) 7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점수 고득점순 1배수 선정(예비 선정 가능) 종합심사의 후 최종 협약 금액 확정

- 신청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지원 규모의 4배수 미만일 경우,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단계 서면 40%, 2단계 발표평가 60%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상위 1배수를 선정
-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계산

○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관리 체계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브랜드 관리 여부 - 패션쇼, 룩북, 브랜드 소개서, SNS 등 일관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등 글로벌 메시지 전달력 보유 여부 - 명확한 브랜드 철학, 표현방식 일관성, 글로벌 이해 가능성	20
	기관 전문성·실적	국내외 패션워크/쇼룸/유통 경험 등의 이력 및 수주 실적 최근 브랜드의 성장 흐름 등	
참여인력	인력 구성	적정 인력 구성 및 배치	15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사업비	사업비 규모	사업비(국고자부담) 규모 적정성, 진출 시장에 적합한 사업비 편성 여부	15
	편성 내역	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합리성, 자부담의 이행 비율	
	자부담금 조달 계획	조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기획력	독창성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차별성	50
	경쟁력	브랜드의 컬렉션과 컨셉의 글로벌 시장 수용 가능성 디자인 및 트렌드 부합성, 타겟 시장 적합성 경쟁 브랜드 대비 차별점 및 브랜드만의 고유 강점	
	작품성 및 완성도	컬렉션 기획의 완성도·예술성·일관성	
	수요·시장 분석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워크에 대한 수요, 환경 분석 및 브랜드 적합성	
	달성 가능성	세일즈, PR 관련 목표, 패션쇼 구성 등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합 계			100

-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관리 체계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브랜드 관리 여부 일관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등 글로벌 메시지 전달력 보유 여부 - 명확한 브랜드 철학, 표현방식 일관성, 글로벌 이해 가능성	20
	추진의지	과제책임자의 수행 의지·충실도	
기획력	독창성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차별성	34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경쟁력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과 스토리의 독창성 브랜드의 컬렉션과 컨셉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디자인 및 트렌드 부합성, 타겟 시장 적합성 경쟁 브랜드 대비 차별점 및 브랜드만의 고유 강점	
	수요시장 분석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위크에 대한 수요, 환경 분석 및 브랜드 적합성	
기대성과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44
	시장성	제안한 세일즈 전략 구체성(접근방안) 및 실현가능성 과거 실적 및 미래 수주 전망	
	해외 진출 가능성	패션쇼 이후 현지 미디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글로벌 PR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협업 가능성 등 글로벌 홍보 확산 가능성	
ESG (계량)	지역균형	지역기업 참여 여부(주관기관 본사 기준) : 1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1점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여부 : 1점 (고용형태, 수행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인원 수 제시) ※ 제출 1점, 미제출 혹은 제출 내용 미흡 0점 ※ 결과보고서 및 결과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 확인	1
합 계			100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사업자 및 디자이너 기준 1개 신청서만 본 사업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문의처

- 사업문의 : 오은별 과장 ☎061-900-6231, sstar5@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안내사항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표준 계약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